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
 - 가.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.
 - 나.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.
 - 다.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금 ○○○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거나 원고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.
 - (1) 대 여 금 : 금 ㅇㅇㅇ원

대 여 일: 2000. 0. 0.

변제기일: 2000. 0. 0.

(2) 대 여 금 : 금 ㅇㅇㅇ원

대 여 일: 2000. 0. 0.

변제기일: 20○○. ○. ○.

(3) 대 여 금 : 금 ○○○원

대 여 일: 2000. 0. 0.

변제기일: 20○○. ○. ○.

- 2.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각각 빌려갈 때는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준다고 하며 빌려갔으나,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려간 지 무려 1년 내지 2년이 다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원고는 원고의 생활이 어려워져 피고에게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빨리 돌려 달라고 독촉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는 "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"고 하기에 원고는 이를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은 피고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무통장입금증

1. 갑 제2호증의1, 2

각 현금자동입금지급기 이용명세표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. ^{xx}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